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7차기획재정위원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박대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90호)

2024. 11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이정은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(박대출의원안)	2

I. 개요

1.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290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박대출의원 등 12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6. 11.
- (3) 회 부 일 : 2024. 6. 27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,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%를,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%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36 신설 등)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(박대출의원안)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제5장의12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☐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제121조의36) ○ 감면대상: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*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*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○ 감면율: 사업개시 후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○ 감면한도: 투자누계액의 50%+상시근로자수×1,500만원 ☐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(제121조의37) 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-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○ 적용기한: 2028. 12. 31. ○ 시행일: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○ 적용례: 이 법 시행 이후 감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
* 박대출의원안 2024. 6. 11. 제출(의안번호 290)

☐ 개정안은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박대출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신설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

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-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이하 ‘특별법안’)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2024년 설립된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청사 건설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·고시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의미함.¹⁾

또한, 특별법안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발계획 등의 수립, 도로,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,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,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²⁾

이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해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등 교육기관 지정, 연구기관·국제기구·종합병원·대학 등의 지원, 산학협력 촉진,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국세,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.³⁾

- 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인하고,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

1)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 제6조

2)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 제30조 및 제39조

3)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

여 산업·연구·국제교류·교육·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으므로,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□ 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첫째, 현재 항공·우주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있어 R&D 및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⁴⁾을 적용받고 있어, 여타 지역과의 차등과세 문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
둘째,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액 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, 세부담의 형평성·국민개납주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최저한세의 취지에 비추어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⁵⁾

셋째, 개정안 제121조의37에서는 세무서장과 함께 세관장을 감면세액의 추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관세를 감면하는

4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7]

5) 「조세특례제한법」

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 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이하 이 조에서 "과세표준"이라 한다)에 100분의 17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"법인세 최저한세액"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1. 삭제<2019.12.31.>

2. 제8조, 제8조의2, 제10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28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3, 제55조의2제4항, 제60조제2항, 제61조제3항, 제62조제1항,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, 손금산입금액,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(이하 생략)

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세관장은 추정권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- 참고로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의 전제가 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신설·규정하는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박대출 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심사 경과에 맞추어 논의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155